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안내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는 구성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2000. 6. 30) 및 개정(2002. 1. 7, 2008. 12.18)
- ✦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성희롱·성폭력 상담 업무 시작(2000. 12. 22)
- ✦ 성희롱성폭력상담소 개소(2002. 12. 20)
-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1~6차 실시(2004년부터 매년)
- ✦ 성문화 행사 자기방어훈련 <액션스쿨> 시즌1~4 개최(2007년부터 매년)

주요업무

▶ 상담지원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담소로 찾아와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소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조사·처리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기교육과 강연,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매년 1회 학내 구성원들(학생, 교원, 직원, 외국인)에게 온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성평등 문화행사

상호존중의 성평등 문화를 지향하는 기획강연회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성평등 학생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기방어 몸훈련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합니다.

▶ 실태조사 및 연구

대학내 성문화와 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성인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2004, 2009), <학생 집단별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유형과 예방대책 연구>(2010)가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 발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해결·처리에 관한 지침서와 자료들을 발간·배포합니다.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세요 !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는 매년 새로운 온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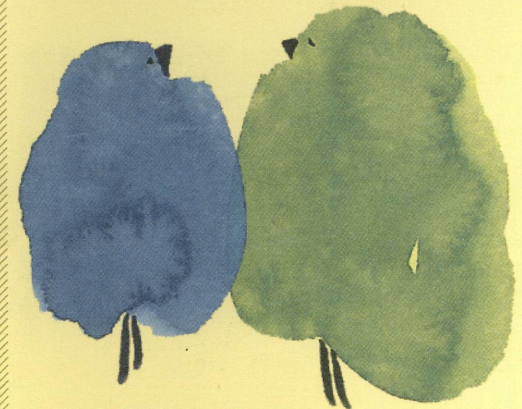
학생, 교수, 강사,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은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 따라 매년 1회 온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방법

1. 상담소 홈페이지(help.snu.ac.kr)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바로 시작>을 클릭합니다.
2. 이름 등 인적 정보를 입력한 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3. 예방교육 완료 후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평등한 대학만들기





대학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왜 중요할까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와 선배들이 함께 하는 학과나 동아리 모임에서, 뒷풀이나 MT 장소에서, 그리고 강의실과 도서관, 연구실 등에서 여러분은 서로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수많은 만남의 장면이 항상 유쾌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자는 모름지기 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마땅히 저러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고, 성문제를 바라보는 남녀의 인식과 태도 역시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오해인지, 갈등인지, 타파해야 할 관습인지 분명하지 않아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만남이 불가피한 단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그 피해자로 하여금 학과, 동아리, 수업 활동을 스스로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매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희롱인지, 우리의 일상문화와 성희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방을 위해 어떤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즐겁고 평등한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①항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성적 언행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습관화된 성적 언행이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발언이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언행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침묵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 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며, 진정한 배려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위나 친밀한 관계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후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 혹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 이용절차

1. 상담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를 원치 않을 때 상담소의 중재를 통해 사과를 받거나 합의할 수 있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접수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원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처리 및 해결

상담소는 사건 당사자들을 중재하거나,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교육, 징계요청,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취합니다.

